

## [별지]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수급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정부24,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에서 발급)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0호)

☞증빙서류: 차상위계층확인서(정부24,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에서 발급)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

(단위: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이상      |
|-----------------|-----------|-----------|-----------|-----------|-----------|
| 2023 기준<br>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경력단절여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여성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중 택1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증빙서류: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정부24,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 등),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 의) 등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에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확인서(민원24, 읍/면/동 주민센터)

(산정특례대상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인 자

☞증빙서류: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보호종료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증빙서류: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한 청소년

☞증빙서류: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 청소년쉼터 입퇴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매매피해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li><li>○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li><li>○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li><li>○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li></ul> |
|---|

☞증빙서류: 별도의 증빙서류 요청하지 않음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증빙서류: **별도의 증빙서류 요청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정부24 등에서 발급)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따른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름)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증빙서류: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확인서

국적 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 상의 F-2 또는 F-5, F-6 비자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계기관(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직인 포함 확인서(공문)

(아동·청소년)

(국적취득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미취득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외국인등록증 상의 F-2 또는 F-5, F-6

## (범죄구조피해자)

제 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 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증빙서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장기 실직자) 실직일(또는 퇴직일)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또는 일용)

## (노숙인)

☞증빙서류: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증빙서류: 관계기관 사실 확인서

(취약계층 가정) 저소득, 장애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대상자와 그 가족(최대 5인)도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통해 참가대상에 포함

(기타) 조손가정,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29.)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 서류로 인정 가능